

관리번호 : A - LC - 004

주관부서 : IR팀

경영위원회규정

제본 및 복사본은 Uncontrolled Document임

The logo for t'way, featuring the lowercase letters 't' and 'way' in a bold, red, sans-serif font. A small green apostrophe is positioned above the 't'.

유효 페이지 목록

페이지	개정 번호	개정일자
표지	4	01 FEB 2024
개정기록표	5	27 JUN 2025
유효페이지목록	5	27 JUN 2025
목차	1	29 MAR 2019
제 1 장 총 칙		
1-1	4	01 FEB 2024
제 2 장 구 성		
2-1	5	27 JUN 2025
제 3 장 회 의		
3-1	3	13 APR 2023
3-2	3	13 APR 2023
제 4 장 부 칙		
4-1	5	27 JUN 2025

페이지	개정 번호	개정일자
Approved by 이사회		
이사회 승인 득 (2025.06.27)		

목 차

제1장 총칙

1.1 목적	1-1
1.2 적용범위	1-1
1.3 기능	1-1

제2장 구성

2.1 구성	2-1
2.2 위원장	2-1

제3장 회의

3.1 개최시기	3-1
3.2 소집권자	3-1
3.3 소집절차	3-1
3.4 결의방법	3-1
3.5 관계인의 의견청취	3-1
3.6 결의사항	3-1
3.7 이사에 대한 통지	3-2
3.8 이사회 재의결	3-2
3.9 의사록	3-2
3.10 간사	3-2
3.11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2

제4장 부칙

4.1 시행일	4-1
---------	-----

제1장 총 칙

1.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이하 “회사”라 한다)의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규정 3.4에 의거하여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기능

위원회는 이사회 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본 및 복사본은 Uncontrolled Document임

제2장 구 성

2.1 구성

- 2.1.1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 2.1.2 위원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1.3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 2.1.4 경영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2 위원장

- 2.2.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2.2.2 위원장 유고시는 **EVP1, EVP2, SVP1, SVP2**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3.1 개최시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소집권자

3.2.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3.2.2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3 소집절차

3.3.1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3.3.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3.3.1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4 결의방법

3.4.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4.2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4.3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4.4 3.4.3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5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6 결의사항

3.6.1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다.

3.6.2 3.6.1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3.6.2.1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3.6.2.2 항공기 임차에 관한 사항

3.6.2.3 엔진 임차에 관한 사항

3.6.2.4 외화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3.6.2.5 이사회로부터 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3.7 이사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8 이사회 의 재의결

이사회 구성원 1/3 이상의 이사가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3.9 의사록

3.9.1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3.9.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3.10 간사

3.10.1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3.10.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3.11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11.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3.11.2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 장 부 칙

4.1 시행일

- 4.1.1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 4.1.2 본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4.1.3 본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4.1.4 본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4.1.5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4.1.6 본 규정 2.2.1은 2025년 6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하며, 2.2.2는 2025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